



: 2018-11-2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023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18. 8. 23.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682,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30.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150,000,000원이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02. 4. 29.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전부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02. 4. 30.부터 2002. 5. 2.까지 중도금 35,000,000원(실제로 지급한 액수는 35,000,000원에서 D이 미납한 부가가치세 등 2,600,000원을 공제한 32,400,000원이다), 2002. 5. 28. 잔금 1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중 7,500좌를 원고 본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7,50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중 3,000좌는 2002. 5. 2. E에게, 4,500좌는 2002. 8. 7. F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 E, F에게 명의신탁한 위 각 출자좌에 관하여 다시 원고의 배우자 G과 동생 H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7. 3. 23.부터 2017. 3. 24.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위 명의개서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G, H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2. 원고에게 취득세 25,682,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7. 10. 31.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 12. 2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양수 당시부터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출자자로서 E과 F에게 이 사건 지분의 출자자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배우자 G과 동생 H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던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를 지방세법 제5항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



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을 F,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출자지분을 가진 사원이라야만 임원, 즉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갑 제5호증), 원고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약 20년 전 당시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고자 차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이 건 법인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지분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명의신탁 또는 명의개서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달리 신빙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위 명의신탁 또는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각 명의신탁 또는 명의개서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 2018-11-29

따라서 원고가 당초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F, E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과점 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또 다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G과 동생 H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